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

<목 차>

1.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
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

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	소관부처	해양수산부	작 성 자	이름	정윤석
	담당부서 (과)	수출가공진흥과		직급	해양수산사무관
	국장	김재철		연락처	044-200-5488
	과장	김성희		이메일	in13043870@mail. go.kr

2021. 09. 30. 작성

정책책임자직위

성명 (서명)

< 규제 개요 >

기본 정보	1.규제사무명	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기준		
	2.규제조문	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, 제5조, 제7조, 별표1, 별표2, 별표3, 별표4, 별표5		
	3.위임법령	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, 제8조제5항, 제10조제5항		
	4.유형	신설	5.입법예고	2021.10.07 ~ 2021.11.15
규제의 필요성	6.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	○ 김산업 진흥을 위해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·개발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 및 운영 기준 설정 필요 ○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 산업과 관련된 연구·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지정될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예산이 지원될 수 있어 인력, 시설·장비 등에 대한 적정 지정요건과 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대한 운영 기준을 정하여 불량 또는 부실 운영의 사전 예방 등 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개입이 필요함		
	7.규제내용	<교육훈련기관> ○ (지정요건) 시설·장비, 교육과정 및 강사 등 세부 기준 설정 ○ (운영기준)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(취소),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교육 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불량한 경우 등(경고 → 업무정지 → 지정취소) <전문인력 양성기관> ○ (지정요건) 김 관련 연구기관, 김산업 관련 공공기관·법인 등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, 시설·장비, 교육과정 및 강사 등 세부 기준 설정 ○ (운영기준)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(취소),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거나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불량한 경우 등(경고 → 업무정지 → 지정취소) <김산업 전문기관> ○ (지정요건) 김제품 연구·개발을 수행할 인력을 갖추고, 김제품 연구·개발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(정관)되어 있는 기관으로 함 ○ (운영기준)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(취소),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(경고→ 업무정지 → 지정취소)		
	8. 피규제집단	○ 김 관련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(수산계열 대학교 및 고등학교),		

	및 이해관계자	김산업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		
		유 형		인원수 또는 규모
		관련기관		
규제의 적정성	9.규제목표	○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불량 또는 부실 운영 기관 지정·운영 사전 예방 ○ 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		
	10.영 향 평 가 여부	기술영향평가	경쟁영향평가	중기영향평가
		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기타	11. 비용편익 분석 (정성분석)	해당 없음		
	12.일 몰 설 정 여부	해당 없음		
	13. 우선허용· 사후 규제 적용여부	해당 없음		

<조문 대비표>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제4조(교육훈련기관의 지정·운영 등)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. 강사 등 관련 인력의 확보 현황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 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의 적정성 2. 강사 등 관련 인력 확보의 적정성 3. 교육대상에 따른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적합성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의 타당성 ③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⑥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제5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김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는 교육기관 또는 김산업 분야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 2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3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산업 관련 기관 4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5. 「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수

현 행	개 정 안
	산식품산업 관련 기관 6. 법 제10조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 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2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.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⑥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현 행	개 정 안
(신설)	제7조(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. 1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보유할 것 2. 기관·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이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 신청기간과 그 밖의 지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③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1. 인력 현황 2. 사업 시행 및 운영·관리 계획 3. 김산업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 4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.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

현 행	개 정 안
	에 따라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. ⑥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김산업 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연도의 사업 계획 및 전년도 사업추진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 ⑦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5과 같다.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현행

개정안

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별표 1)

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

(제4조제3항 관련)

-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
 - 강의실: 면적[내벽 간 바닥면적]을 실측(實測)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
 - 실습이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
 - 실습실 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일 것
 - 급수시설은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 제3항에 따른 수질 기준에 적합할 것
 - 화장실: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, 교육과정에 비추어 적절한 규모 일 것
 - 조명시설: 야간 강의 시 책상 면과 칠판 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
 - 소방시설: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것
 - 교육장비: 컴퓨터 등 교육에 필요한 장비를 보유할 것
- 교육과정: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 중 하나 이상을 운영할 것
 - 김의 생산·양식 기술 관련 교육과정
 - 김 제품의 가공·제조·포장·저장 기술 관련 교육과정
 - 김 제품의 품질관리·위생안전 관련 교육과정
 - 김 제품의 소비·요리 관련 교육과정
 - 그 밖에 김 제품과 관련된 기술 등의 보급·전수에 필요한 교육과정
- 교육시간: 교육시간(실습을 포함한다)은 최소 2시간 이상이 되도록 할 것
- 강사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일 것
 -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 또는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에 법인으로 등록한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 -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력이 풍부한 사람
 - 김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
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별표 2)

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기준

(제4조제6항 관련)

- 일반기준
 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로 한다.
 -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각각의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.
 -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 - 가중 사유
 -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교육생에게 미치는 피해가 그다지고 인정되는 경우
 - 감경 사유
 -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다. 교육훈련 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3개월	지정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훈련을 하지 않은 경우	법 제7조 제4항제4호	경고	지정취소	

현행

개정안

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3]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(제5조제3항 관련)

- 교육시설과 교육장비
 - 강의실: 면적[내벽 간 바닥면적을 실측(實測)하여 계산한 면적을 말한다. 이하 같다]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이 1개 이상일 것
 - 실습실: 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실습실이 1개 이상일 것
 - 실험실
 - 면적: 60제곱미터 이상이고, 필요시 불연재의 칸막이 사용이 가능할 것
 - 교육장비: 사상제 배양 챔버, 광학현미경, 형광현미경(UV), 해수염프, 해수필터, 멸균기(Autoclave), pH meter, 염도측정기, 마이크로피펫, 유전자증폭기(Gradient PCR, dRT-PCR 등), 무균작업대(Clean Bench), 초저온 냉동고, 전기영동기, 분광광도계(Spectrophotometer) 건조기, 조단백질측정기, 회화로, 이온측정 장비 등을 갖춘 것
 - 화장실: 남녀 구분이 있고, 교육과정 규모에 적절할 것
 - 급수시설: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질이 「먹는물관리법」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질기준에 적합할 것
 - 조명시설: 야간 강의 시 책상면과 칠판면의 조도가 150럭스 이상일 것
 - 소방시설: 「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소화설비, 경보설비, 피난설비, 소화용수설비 등 방화 및 소방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
- 교육과정: 다음 각 목의 교육과정을 하나 이상 운영할 것
 - 김산업 취업 희망자 교육과정
 - 김산업 종사자 보수교육과정
 - 김산업 경영 교육과정
 - 김산업 마케팅 교육과정
 - 김산업 관련 법규 교육과정
 - 김 제품의 품질향상, 개발 및 위생 관련 교육과정
 - 김 제품 생산·가공·제조·조리 관련 강사 양성 교육과정
 - 그 밖에 김 제품의 세계화에 필요한 교육과정
- 교육시간(실습시간을 포함한다): 교육과정별 40시간 이상일 것
- 전문 교수요원: 다음의 자격기준을 하나 이상 갖춘 것
 -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한 학기 이상 강의한 경험이 있는 사람
 - 제2호의 교육과정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
 - 김산업 관련 현장 업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평가관리: 교육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평가할 것

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
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(제5조제6항 관련)

- 일반기준
 -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만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.
 -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유형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.
 -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률문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
나. 제5조제3항 및 별표 1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2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다.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된 교육과정 또는 내용이 극히 불량한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3호	경고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라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8조 제4항제4호	경고	지정취소	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
	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(별표 4)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 (제7조제7항 관련) 1. 일반기준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 나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. 다.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. 2. 개별기준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798 665 1415 956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798 665 1069 745" rowspan="2">위반행위</th><th data-bbox="1069 665 1171 745" rowspan="2">근거 법조문</th><th colspan="3" data-bbox="1171 665 1415 705">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</th></tr> <tr> <th data-bbox="1171 705 1254 745">1회 위반</th><th data-bbox="1254 705 1331 745">2회 위반</th><th data-bbox="1331 705 1415 745">3회 이상 위반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798 745 1069 824">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</td><td data-bbox="1069 745 1171 824">법 제10조 제4항제1호</td><td data-bbox="1171 745 1254 824">지정취소</td><td data-bbox="1254 745 1331 824"></td><td data-bbox="1331 745 1415 824">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798 824 1069 891">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</td><td data-bbox="1069 824 1171 891">법 제10조 제4항제2호</td><td data-bbox="1171 824 1254 891">경고</td><td data-bbox="1254 824 1331 891">업무정지 6개월</td><td data-bbox="1331 824 1415 891">지정취소</td></tr> <tr> <td data-bbox="798 891 1069 956">다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</td><td data-bbox="1069 891 1171 956">법 제10조 제4항제3호</td><td data-bbox="1171 891 1254 956">업무정지 3개월</td><td data-bbox="1254 891 1331 956">업무정지 6개월</td><td data-bbox="1331 891 1415 956">지정취소</td></tr> </tbody> </table>	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	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다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		위반횟수별 행정처분기준																				
		1회 위반	2회 위반	3회 이상 위반																				
가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1호	지정취소																						
나.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2호	경고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																			
다.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	법 제10조 제4항제3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																			

I.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

1.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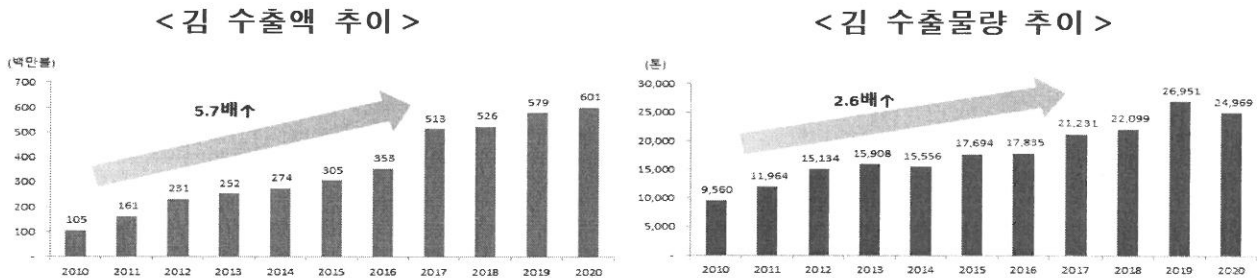
- 글로벌 식품 트렌드인 ‘간편하고 건강한 식품’ 요건을 충족하는 김은 ‘20년 수출 6.1억불을 달성하며 수산식품 수출 1위 품목으로 성장

* 김 수출(억불) : ('10) 1.1 → ('12) 2.3 → ('15)3.0 → ('17)5.1 → ('18)5.3 → ('19)5.8 → ('20)6.1

** 시장규모 : 김(3.5조원) > 김치(2.5조원) > 인삼(1.4조원)

- 지난 11년('10~'20년)간 우리나라 김 제품의 수출금액(연평균 19.0%)과 수출물량(연평균 10.1%)은 지속적으로 증가

* 수출금액(5.7배) : ('10) 1.05 → ('20) 6.01억불, 수출액(2.6배) : ('10) 9.6 → ('20) 25.0천톤



- 김 세계시장(695백만불, '20년) 중 한국 86.4%(601백만불), 중국 11.4%(79백만불), 일본2.2%(15백만불) 순으로 한국이 압도적인 세계 수출 1위

* 現 중국은 자국 소비용(원형, 김국용) 제품 위주로 생산 중이나, 우리나라 주요 생산 형태(마른김/조미김)와 동일하게 생산 확대 시 김제품 수출시장 내 위협 가능

⇒ **김 수출 증대와 글로벌 식품화를 위해 생산 - 가공 - 수출에 걸친 체계적인 김 산업 육성방안 마련 필요**

- 김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근거법인 「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0.12.22 공포 → '21.12.23 시행)

* (주요내용) ▲ 김산업진흥 기본수립 ▲ 실태조사 ▲ 연구 및 기술개발 ▲ 전문인력 양성 ▲ 정보시스템 구축 ▲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 ▲ 김산업진흥구역지정 등

- (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) 김과 관련된 기술 등을 보급하기 위한 교육훈련과 김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양성기관 지정
- (김산업전문기관 지정) 김산업과 관련된 연구·개발을 통해 김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

2.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

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

-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관련 연구·개발을 수행할 기관의 부실 또는 불량 운영을 차단하고,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 기반 마련 필요
-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관련 분야의 연구·개발을 수행할 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은 필수적인 사항으로 대안 없음

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

이해관계자명	주요 내용	조치결과

* 입법예고를 통해 피규제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에 대한 규제 반영 여부를 검토 예정

3. 규제목표

「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전문성과 공신력을 갖춘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하여 김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기반 마련

II. 규제의 적정성

1. 목적·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

- 「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의 제정 취지에 부합토록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수행할 기관이 인력, 시설·장비 등 기본적인 교육운영이 이뤄지도록 지정요건을 설정하는 것이며,
- 김산업 진흥을 위해 김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 연구·개발, 식품안전성 확보에 관한 연구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설정하려는 것임.

- 아울러,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부실 또는 불량 운영을 예방하고자 운영기준을 설정하였고, 위반행위의 동기, 위반 정도,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되었기에 최소한의 운영기준으로 볼 수 있음

2.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

영향평가		
기술	경쟁	중기
해당없음	해당없음	해당없음

○ 영향평가

- 기술규제영향평가

해당 없음

- 경쟁영향평가

해당없음

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	해당 여부
(A)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	해당 없음
(B)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	해당 없음
(C)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	해당 없음
(D)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	해당 없음

- 중기영향평가

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과
김산업 전문기관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도록 설정된
기준으로 장기영향평가는 불필요

-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

① 규제 영역	운영관리
② 규제 방식	기준설정
③ 예비분석모델	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 요건을 설정하는 것으로 분석 불필요
판단 근거	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하는 기관 및 단체(비영리법인 포함)가 해당됨
④ 대상 업종	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, 연구소, 기관 및 단체 등이 해당됨
⑤ 예비분석내용	① 규제 대상 집단의 특성 파악 -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, 연구소,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② 유사사례 분석 - 김치, 전통주 및 수산식품산업 등 진흥을 위한 법령에서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 ③ 차등화 대상 결정 - 교육훈련기관,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, 연구소, 기관 및 단체 등이 대상임에 따라 차등화 곤란
⑥ 차등화적용 여부	해당 없음

o 기타 고려사항

- 시장유인적 규제설계

해당 없음

- 일몰설정 여부

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·운영하기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지정 및 운영 기준이 설정되어 있어 일몰설정의 실효성이 현저히 낮음

- 우선허용·사후규제 적용 여부

분류	적용여부	적용내용/미적용사유
포괄적 개념 정의		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
유연한 분류 체계		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
네거티브 리스트		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
사후 평가관리		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
규제 샌드박스		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효율적 이고 체계적인 지정·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한 지정 및 운영 기준을 설정하는 것임

3.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

○ 해외사례

해당 없음

○ 타법사례

○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

제5조(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 등)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지정 기준과의 적합성 여부와 지역별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⑤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○ 김치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6조

제6조(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)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김치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·운영하는 학교

2. 제1호의 학교에 설치된 부설연구소 등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

3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 따라 설립한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김치산업에 관한 연구를 하는 연구기관
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김치산업 관련 공공기관

5.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김치산업 관련 비영리법인

6.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중 김치산업 관련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

7. 법 제18조에 따라 김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업자단체

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
2. 전문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
3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운영계획서
4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
5. 삭제 <2021. 1. 5.>

③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
⑤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○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

제7조(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의 지정 등)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전문기관(이하 “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”이라 한다)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해야 한다.

1.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인력을 2명 이상 보유할 것
2.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이나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에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업무가 주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을 것

③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인력 현황
2. 사업 시행 및 운영·관리 계획
3. 수산식품산업 정보분석 관련 연구 또는 사업 실적
4.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
⑥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.

⑦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정보분석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.

Ⅲ. 규제의 실효성

1. 규제의 순응도

○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

법령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·개발 수행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인력, 시설·장비 등에

관한 지정 기준과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의 운영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부담은 낮으며 준수 가능성은 높음

2. 규제의 집행가능성

○ 행정적 집행가능성

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 시 교육 시설·장비, 인력 등 보유현황, 정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행정부담은 낮음

○ 재정적 집행가능성

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 신청 시 교육 시설·장비, 인력 등 보유현황, 정관 등의 서류 및 현장(필요시) 확인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재정부담은 낮음

IV.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

1. 추진 경과

-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(‘21.3.25~12.19)을 통해 교육훈련, 전문인력 육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에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하고, 지정 가능한 관련 기관 및 단체(법인) 등의 수준을 파악을 통해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으로 지정 및 운영 기준 설정

2. 향후 평가계획

-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에 대한 교육, 연구·개발 등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평가·모니터링 실시하여 지정 및 운영 기준에 대한 조정 필요성 검토할 계획임

3. 종합결론

- 「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정 목적에 따라 김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 지정에 있어 정부

차원이 개입이 필요함

- 김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교육 훈련, 전문인력 양성 및 김산업 전문기관의 최소한의 필요한 수준의 지정 및 운영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